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류성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63

발의연월일: 2021. 2. 10.

발 의 자:류성걸・윤영석・최승재

윤창현 · 서병수 · 정희용

김태흠 • 서범수 • 김예지

구자근 · 김정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에 대하여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15 0%을 넘지 못하도록 하면서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의 $105\%\sim130\%$ 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율의 변화가 없 더라도 과세표준의 증가로 인한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격한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자가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102%를 초 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완만한 재산세의 인상을 통해 재 산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거주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 는 것임(안 제122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다만,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

- 1.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2
- 2.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× (1 +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세 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)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해당 재 제122조(세 부담의 상한) ---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 (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 을 말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 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 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 다 다 만,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만,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다음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. 1.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 1.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 가격(이하 이 조에서 "주택공 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 시가격"이라 한다) 또는 특별 의 102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 시장・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 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

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

- 2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 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
- 3.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 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 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
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
 택의 경우: 해당 주택에 대한
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
 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
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
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

<삭 제>